

기분 좋게, 먼저 시작하세요!

남보다 앞서서 시작하는 **[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]**, 믿음직한 지원과 많은 혜택이 있어서 든든합니다.

■ 사업주를 위한 각종 지원

- 사업장별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·위험요인 평가기법과 평가 매뉴얼 제공
- 사업장 유해·위험요인 평가요원에 대한 무상 실무교육 및 법정교육으로 인정
- 참여 사업장에 대해 무상 컨설팅 실시
- 요청 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융자·보조
- 지속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한 기술 / 재정 / 교육 서비스 지원

■ [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] 기대 효과

-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
-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쟁력 향상
- 노·사 재해 예방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
-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
- 재해에 따른 직·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

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으로!

선진 외국보다 산업재해율이 3~7배 높은 대한민국.
노·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을 스스로 챙기는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.
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**[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]**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■ 선진 외국의 유해·위험요인 평가 제도화 현황

- 유럽연합(EU) : 1989년 산업안전보건지침(Directive 89/391)
- 영국 : 1992년 보건안전관리규정(MHSWR)과 위험성 평가지침(GRAR)
- 독일 : 1996년 「사업장근로자 안전보건법」
- 미국 : 1998년 자율보호프로그램(VPP)
- 일본 : 1999년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(OSHMS)
- 이밖에 싱가포르(2006년), 호주(1989년) 등에서 도입·운영 중

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안내기관(문의처)

고용노동부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 남동구 노동청길 91
Tel. 032-460-4400 Fax. 032-431-4900
0505-130-0359

부산북부지청 부산시 사상구 백양로 920
Tel. 051-309-1552 Fax. 051-309-1569

대구북부지청 대구시 북구 구암로 83
Tel. 053-605-9056 Fax. 053-321-6131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~6층
Tel. 062-975-6330 Fax. 062-975-6359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서구 시청북2길 12
Tel. 042-480-6301 Fax. 042-480-6229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경인지역본부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1
Tel. 032-5707-226 Fax. 032-581-2415

부산지역본부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86-49
Tel. 051-5200-529 Fax. 051-526-7965

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~20층
Tel. 053-6090-522 Fax. 053-421-862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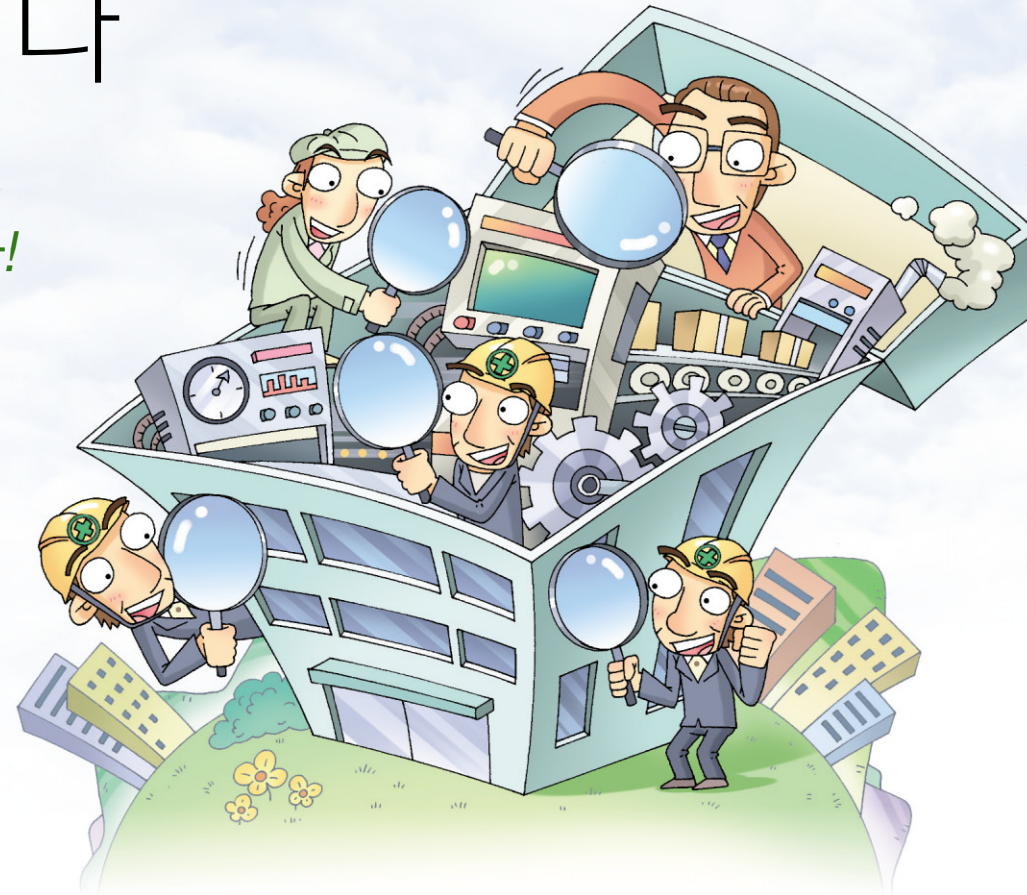
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-1 광주무역회관빌딩 8~9층
Tel. 062-9498-772 Fax. 062-943-9549

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
Tel. 042-6205-613 Fax. 042-636-1988

[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]가 해답입니다

안전은 규제가 아니라
스스로 지키는 가치입니다!

[유해·위험요인 자기관리],
먼저 시작할수록
돌아오는 이익과 혜택이
더욱 커집니다.



타율적 규제는 이제 안녕! 사업장 안전 스스로 챙기면?

- 산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- 재해 손실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
- 정부 규제가 없어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됩니다.
-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완화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.
-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, 생산성 향상,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커집니다.

내 재산 남에게 맡길 수 없듯 내 사업장 안전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.

“위험을 보는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”

사업주 스스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
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직업병 발생 원인을 찾아내고
유해·위험정도(위험도)를 판단, 개선을 반복하는 노·사 협력적 자율안전보건활동 체계를 말합니다.
이를 통해 개별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활동이 가능해지고, 정부의 간섭 및 규제는 최소화됩니다.

Ⅰ 시범사업 추진·시행 일정

- ▶ 2010년~2012년 동안 3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면 시행 예정
- ▶ 2011년은 5개지방 고용청(지청)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
 - 고 용 노 동 청 :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광주지방고용노동청, 대전지방고용노동청, 부산북부지청, 대구북부지청
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: 부산, 광주, 경인, 대구, 대전지역본부

Ⅱ 사업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

항 목	시행 전	시행 후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준수	법령 전체 규제 내용에 대해 이행 의무	유해·위험요인 평가결과와 필요 내용만 선별 이행 (건강 진단 등 근로자 기본권 및 타 법령 연계 사안은 제외)
감독·점검	개별 조문 중심 감독·점검	시스템적 감독·점검
사업장 방문 조사	중대재해, 위험기계 발생 재해 조사	중대재해 조사를 제외한 위험기계 발생 재해 조사 면제
위법사항 처벌	적발 시 예외 없는 처벌,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	불가피한 경우(고소·고발, 사회적 물의) 외에는 면책, 중대재해도 예방 노력 감안하여 경감

시범사업 참여 사업장 이익은?

재해 예방·감소에 따른 부대효과

- 숙련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
-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과 유대감 강화
- 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부가가치 창출

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·간소화

- 장기적인 안전보건 운영계획 수립 가능
- 각종 서류(교육일지, 보호구지급대장 등) 작성 불필요

경제적 이익

- 재해 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 최소화
- 보험요율제를 통해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
- 재해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 감소
- 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모경비 경감
- 시범기간 참여 시 무상 평가 체계 완비 가능

Ⅰ 시범사업 절차·지원사항

① 참여신청

사업주 → 노동관서

- 무상교육(실습 위주)
- 평가 매뉴얼 등 관련자료 제공

② 교육

사업주·평가담당자 교육

- 워크숍 실시
- 무상교육(실무 위주)
- 실행서약서 작성

③ 이행계획서 제출

사업장 → 노동관서

- 6개월 점검 면제
- 재정지원 등 무상지원
- 교육·정보자료 지원
- 예비인정서 발급

④ 유해·위험요인

사업주가 지정한 평가요원

- 공동 시범 평가 지원
- 컨설팅(지도)
- 관련정보 제공

⑤ 위험 개선

사업장 → 노동관서

- 인정서 발급
- 24개월 점검 면제

⑥ 공지 및 반복시행

근로자공지 및 주기적 반복 시행

- 기술·교육·정보자료 등 사업주 요청 필요 내용 지속 지원

[유해·위험요인
자기관리]
성공 요건

사업주의
능동적 의지

근로자의
자발적 참여

사업장 특성에
맞는 지속적인
실행 노력

